

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, 2024년 더 든든하게 찾아갑니다



8세(또는 초등 2년)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
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.

♥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% 지원(월 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



2024.1.1.부터 '6+6 부모육아휴직제'가 도입됩니다
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**맞벌이 부모가 모두**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지급합니다.

	기 존	확 대
지원기간	첫 3개월	첫 6개월
자녀연령	생후 12개월 이내	생후 18개월 이내
지원수준 (월 상한액)	(1월) 200만 원 ▶ (2월) 250만 원 ▶ (3월) 300만 원	(1월) 200만 원 ▶ (2월) 250만 원 ▶ (3월) 300만 원 ▶ (4월) 350만 원 ▶ (5월) 400만 원 ▶ (6월) 450만 원

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

♥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,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 중 **공통으로 사용한 기간**을 기준으로 지급

♥ '6+6 부모육아휴직제' **적용기간 이후**에는 **일반 육아휴직급여**로 지급

(단위: 만 원)

모 \ 부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6개월
1개월	부: 200 모: 200	부: 350 모: 200	부: 500 모: 200	부: 650 모: 200	부: 800 모: 200	부: 950 모: 200
2개월	부: 200 모: 350	부: 450 모: 450	부: 600 모: 450	부: 750 모: 450	부: 900 모: 450	부: 1,050 모: 450
3개월	부: 200 모: 500	부: 450 모: 600	부: 750 모: 750	부: 900 모: 750	부: 1,050 모: 750	부: 1,200 모: 750
4개월	부: 200 모: 650	부: 450 모: 750	부: 750 모: 900	부: 1,100 모: 1,100	부: 1,250 모: 1,100	부: 1,400 모: 1,100
5개월	부: 200 모: 800	부: 450 모: 900	부: 750 모: 1,050	부: 1,100 모: 1,250	부: 1,500 모: 1,500	부: 1,650 모: 1,500
6개월	부: 200 모: 950	부: 450 모: 1,050	부: 750 모: 1,200	부: 1,100 모: 1,400	부: 1,500 모: 1,650	부: 1,950 모: 1,950

* 부모 각각의 사용 개월 수에 따른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금액과 일반 육아휴직급여액을 합산한 금액

신청방법은?

- ✓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- ✓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

